* 동아리 회칙 예시안은 가이드라인 제시이기에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으며, 아래 내용들을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신 후 동아리별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수정 및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각 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동아리 상황에 맞게 부연설명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
**‘**CRUSADERS**’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- 본 회는 숭실대학교 CRUSADERS라 칭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**-** 본 회는 숭실대학교 내 미식축구(태클 풋볼, 플래그 풋볼 남, 여)를 대표하는 동아리로써 미식축구라는 스포츠를 즐기고 팀원들간의 팀워크를 향상시켜 더 나아가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- 본 회는 숭실대학교 내에 소재를 둔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-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.

- 임원진의 임기 연장

1)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

2) 임원진이 임기 연장을 원할 경우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- 주장, 부주장은 선수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

- 매니저는 모든 구성원을 임원진에 포함한다.

- 총무는 매니저, 선수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- 임원진은 주장, 부주장, 매니저 그리고 총무로 구성된다.

**제 4조 [집행부]**

- 집행부의 업무는 임원진이 담당한다.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- 집행부 회의는 임원진 회의로 대체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- 회원은 선수와 매니저로 구분된다. (선수는 시합에 참가하는 회원으로 전국 대학 미식축구 협회에 등록한다.)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- 본 회의 회원은 목적 달성을 위한 일에 성실히 참여한다.

- 본 회의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 (대회 참가비, 선수 등록비, 장비 대여료)

-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- 회원은 원하는 시점에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.

- 회원의 탈퇴 시 납부한 회비 중 장비 대여료는 사용한 기간에 비례하여 환불한다. 대회 참가비와 선수등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

**제 4조 [회원의 제명]**

-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회원은 제명된다.

1) 회원에게 폭행, 폭언을 가한 자

2) 부당한 이유로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피하는 자

3) 동아리 방 내에서 문란한 행동을 행한 자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(훈련)**

-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매주 실시되는 정기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

**제 2조 (대회)**

-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전국 대학 미식축구 협회 (이하 협회)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있다.

- 선수 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회원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

**제 3조 (회의)**

-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는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-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, 졸업생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- 회비는 회의에서 정해진 금액을 토대로 결정한다.

- 동아리 탈퇴 시 회비는 제 3장 3조 규정에 의거 환불된다.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- 매달 정기 회의에서 본 회의 결산일지를 공개한다.

- 결산일지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) 수입과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한다.

2) 지출 내역에 관해서는 증빙서류(영수증)을 지참한다.

- 본 회의 모든 회원은 결산 일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동아리 방 사용]**

- 모든 회원은 동아리방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.

- 본 회의 회원 이외의 인원은 동아리방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한다.

- 본 회의 회원 이외의 인원이 부득이하게 동아리방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.

1) 동아리방 사용 시 회원과 비회원은 항상 같이한다.

2) 동아리방 사용 시 임원진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.

3) 동아리방 사용 후 사용 이유를 추후 본 회의 모든 회원에게

공지해야한다.

**제 7장 장비**

**제 1장 (장비)**

- 본 회에서 장비란 다음과 같은 장구류를 의미한다.

1) 미식축구용 헬멧

2) 미식축구용 숄더

3) 미식축구용 팬츠

4) 미식축구공

5) 훈련용 래더

6) 훈련용 미식축구공

**제 2장 (장비 대여)**

- 본 회의 장비를 대여할 회원은 장비 대여료를 납부해야 한다.

- 장비 대여료를 납부한 회원은 장비의 사용 권한을 갖는다.

- 장비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다.

- 위의 장비 목록에서 1), 2), 3) 항목은 개인이 대여할 수 있다.

- 개인이 장비를 대여받은 경우 장비 대여 장부에 기록한다.

- 그 외의 장비는 개인 대여 시 임원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 3장 (장비 사용)**

- 본 회의 장비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 회원은 언제든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.

- 장비는 훈련과 시합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임원진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

- 장비의 사용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